(2026. 10. 27.)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세 한 대 학 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	2026. 10. 27.
위원정수 7명	참석위원 7명

1. 일 시 : 2026. 10. 27.(화) 11:00 ~ 12:00

2. 장 소 : 대학본부 3층 301호

3. 참 석

구 분	직 명	성 명	비 고
참석	위 원 장		
참석	위 원		
참석	위 원		
참석	위 원		
참석	위 원		
참석	위원		안전환경관리자
참석	위원(간사)		안전환경관리자

4. 안 건 :

① 2026년 1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실적

② 2026년 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사항

5. 회의내용(위원장 개회 제안 설명)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업무에 바쁘실텐데도 오늘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정수 7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가 되어 회의가 성원 되었으므로 2학기 정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 집행한 1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실적과 2026년 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사항 등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전환경관리자께서는 준비된 자료를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서는 지급된 자료를 함께 보시고 설명이 끝나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간서명		간서명	

---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발표를 하다 ---

위원장(　　) :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26년 1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실적과 2026년 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 : 연구실안전관리위원 중 처음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학과장님 변경에 따른 위원변경으로서 오늘 이 회의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평소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　원(　　) : 이번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나온 내용으로서 해당 실습실에 게시되어 있는 사고대응 매뉴얼을 최신화 해서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배포된 자료는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원(　　) : 네,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6. 5. 20.부로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연구활동종사자들에 대한 사고대비 보험가입과 관련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체상의 손해만 해당되었으나, 개정 내용은 정신상의 손해까지 포함해서 가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26년 10월에 관련보험이 갱신되었으며, 갱신 직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문 접수는 없었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도 갱신 별도 언급이 없어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가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추가 가입 또는 재갱신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원(　　) : 연구실안전공제에 대학원생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원(　　) : 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대학원생들도 추가하여 가입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안전교육 대상자에도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　원(　　) : 네, 연구실안전공제에 관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　원(　　)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보완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　원(　　) : 네,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자는 신임 교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신임 실습조교가 대상입니다. 매년 1학기 초에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전관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임 교원이나 신임 실습조교의 경우 근로자로서 고위험은 8시간, 저위험은 4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2시간에 해당하므로 집합교육에 참석하신 분께서는 나머지 부족한 시간에 대한 교육은 연구실책임자께서 시행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를 안전관리부서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 : 특수교육과는 연구실안전관리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위　원(　　) : 네, 대학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과학기술분야(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의 모든 학과와 교육계열 중 공학교육, 자연계

교육, 일반교육으로 분류되는 학과가 해당 대상입니다. 또한 실험실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연구실안전법 해설집 발췌] 따라서 문의하신 특수교육과는 2018. 2. 14. 해당 학과에 문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회신 되어 지금껏 제외되었습니다. 2027년 연구실 현황 파악에는 포함하여 재 확인과 검토를 걸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폐회하고자 합니다.

위 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연구실 안전 환경을 위해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길 재차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위 원(): 네, 동의합니다.

위 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 원() : 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간서명은 위원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께 회의 자료를 정서하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 원 : 수고하셨습니다.

6. 논의사항

■ 2026년 1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 2026년 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사항 보고

위 사 실 을 확 인 함.

2026. 10. 27.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회의 및 사무) ①항에 의거 회의록에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서명		간서명		간서명	

세한대학교연구실관리위원회 위 원 장 최

위 원 최

위 원 안

위 원 김

위 원 조

위 원 지

위 원 이

위와 같이 회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26. 10. 27.

세한대학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세한대학교 총장 귀하

간서명		간서명		간서명	